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 A charitable institution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Hong Kong

(서울사무소)

결 정 문

사건번호: **KR-1100055**
신청인: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피신청인 : **Hesong Seo**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청인: 구치오 구치 쏘시에떼퍼아찌오니, 이탈리아 피렌체 50123
비아토르나부오니 73/알

대리인 : 변리사 이승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피신청인: 서혜송(Hesong Seo),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2동 513

분쟁 도메인이름들은 “guccishop.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한국정보인증 주식회사(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16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1.8.5.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DNDRC)
서울사무소 (이하 ‘센터’ 라고 함)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8.5.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1.8.8.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1.9.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가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 규정 (이하 '규정' 이라 함), 통일도메인이름 분쟁해결규정을 위한 아시아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센터 보충규칙 (이하 '보충규칙' 이라 함)에 따른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1.9.2.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고, 2011.9.2. 피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1.9.22. 임을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011.9.22.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미제출통지를 2011.9.28. 피신청인에게 하였다.

2011.9.29. 센터는 이덕재 조정위원에게 선임을 요청하였고, 2011.9.29. 조정부 구성예정통지를 하였고 2011.10.6. 조정인으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조정부를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gucci'는 신청인의 상표 및 상호의 식별력 있는 요부이고, 신청인은 위 문자를 포함하는 다수의 표장들을 한국을 비롯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인데, 분쟁 도메인이름을 주소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각종 웹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i) 분쟁 도메 이름의 요부는 'gucci'로서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여 출처의 혼동우려가 있으며, (ii)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였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B. 피신청인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첨부자료 2 내지 3의 10, 6 내지 17의 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신청인은 이탈리아인 구치오 구치(Guccio Gucci)가 1921년 설립한 회사로서 각종 의류, 액세서리, 가방, 화장용구, 시계 등의 고급 토털패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신청인의 위 제품들은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일 훨씬 이전부터 이른바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2)신청인은 ‘Gucci’ 및 이를 포함하는 상표를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위 상품들에 등록하여 널리 사용하고 있다. (3)신청인의 ‘Gucci’ 상표는 한국에서 발행된 ‘외국유명상표리스트’ 또는 ‘주로 도용되는 외국상표 자료집’ 등에 1978년부터 최근까지 빠짐없이 등재되었다. (4)국내 특허청의 이의결정, 특허심판원의 심결, 법원의 판결, 세계지적재산권(WIPO) 중재조정센터 등에서 ‘Gucci’가 신청인의 저명상표임을 인정한 사례가 다수 있다.

분쟁 도메인이름의 구성 중 ‘shop’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상점의 명칭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고, ‘.com’도 식별력이 없어 결국 분쟁 도메인이름의 식별력있는 요부는 ‘gucci’이다.

따라서 분쟁 도메인이름과 신청인의 상표는 유사하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피신청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달리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이나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Gucci’는 창립자의 성명에서 유래한 저명상표이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단어도 아니므로 피신청

인이 우연히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더하여 분쟁 도메인이름의 웹사이트에서 링크되는 사이트들이 신청인의 제품 판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초기화면 상단에 ‘guccishop.com’ 을 부각하여 게시하고 있는 점(첨부자료 4)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되팔아 상업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정부는 ‘규정’ 제4조 (i)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 도메인이름들인 <guccishop.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이덕재
1인 조정인

결정일: 2011년 10월 25일